예 산 총 칙

2023년도 간주예산 1차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**962,678,000**	**28,880,358**
일 반 회 계	**935,415,000**	**28,062,468**
일 반 회 계	935,415,000	28,062,468
특 별 회 계	**27,263,000**	**817,890**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670,000	50,10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466,000	13,980
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	11,653,000	349,590
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174,000	5,220
주차장특별회계	13,300,000	399,00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,065,453천원으로 한다.
(일반예비비 5,307,148천원, 목적예비비 14,758,305천원)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조서”와 같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

제 6 조 금회 추경 후 국가 및 시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,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할수 있고, 간주처리한 예산은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